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2. 16 선고 2020가합401143 판결 [신탁해지로 인한
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2. 11. 24 선고 2022나14963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2. 16 선고 2020가합401143 판결

전문

원고A종중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피고 1 내지 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

담당변호사 박정현, 이광수, 이찬이

10. K

11. L (개명 전 : M)

12. N

13. O

변론 종결 2021. 10. 15.

판결 선고 2022. 2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'지분'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2 목록 '소장 부분 송달일자'란 기재 해당 일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K, L, N,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종중원인 P(1999. 3. 10. 사망), Q(1972. 12. 17. 사망) 등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, 위 부동산 중 각 1/12 지분에 관하여 망 P, Q 명의로

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을 통하여 망 P의 상속인인 피고 K, 망 Q의 상속인인 피고 L, N, O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.

따라서 피고 K, L, N, O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'지분'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2 목록 '소장 부분 송달일자'란 기재 해당 일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2. 피고 B, C, D, E, F, G, H, I, J(이하 이 항에서는 '피고들'이라고만 한다)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기초사실

1) 원고는 R씨 21대손인 S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바,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아래 [표]와 같이 원고의 종중원들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'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'라 한다).

1	제1 부동산	소유권보존	1971. 9. 10.	T	1/12
U	1/12				
V	1/12				
P	1/12				
W	1/12				
X	1/12				
Y	1/12				
Z	1/12				
AA	1/12				
AB	1/12				
Q	1/12				
AC	1/12				
2	제2 부동산	소유권보존	1970. 11. 2.	T	1/7
U	1/7				
V	1/7				
Z	1/7				
AA	1/7				
AB	1/7				

1	제1 부동산	소유권보존	1971. 9. 10.	T	1/12
AC	1/7				
3	제3 부동산	소유권보존	1970. 11. 2.	T	1/7
U	1/7				
V	1/7				
AD	1/7				
AA	1/7				
AB	1/7				
AC	1/7				
4	제4, 5 부동산	소유권보존	1970. 11. 3.	T	1/4
AB	1/4				
U	1/4				
AC	1/4				

2) 위 T이 1991. 4. 15. 사망하였고, 피고들이 아래 [표]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망 T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

T	AE(처)	2020. 4. 10. 사망1) 망 AE의 상속지분 3/15는 자녀들에게 각 1/6씩 상속되었다.		
M	실종선고2) 망 M에 대하여 1964. 7. 20.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실종선고 심판(이 법원 2015누단414호)이 2016. 7. 5. 확정되었고(갑 제9호증의 3), 망 M은 자녀 등이 없으므로 망 T의 상속인에서 제외한다.			
피고 B	35/210			
AF	1991. 4. 15. 사망	피고 C(처)	21/210	
		피고 D	14/210	
피고 E	35/210			
AG	2014. 1. 8. 사망	피고 F(처)	15/210	
		피고 G	10/210	
		피고 H	10/210	
		피고 I	35/210	
		피고 J	35/210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7 내지 20, 121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종중원들인 망 T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,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을 통하여 망 T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들 원고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않고,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원고가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. 그러므로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다. 관련 법리

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므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, 제사봉행, 종원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[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1다2946, 2953(병합) 판결 등 참조], 종중 구성원의 수가 소수라고 하여 종중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31661 판결 참조).

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,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,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,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,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,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,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,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,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,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·지출관계, 제세공과금의

납부관계,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종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, 그 토지가 종종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9다11397 판결 참조).

라. 구체적 판단

1)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, 갑 제115, 116, 118, 119, 120, 124, 125, 12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 종종 선조들의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분묘와 묘비의 설치·관리상태, 피고 J이 2018. 10. 6.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'시제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산에서 묘지 사용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'는 취지로 발언한 점, 위 정기총회 책자에 첨부된 '종중소유 부동산 현황'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J은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종중규약 개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'종중소유 부동산 현황'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종종총회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한 점,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"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유기적인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미약하였던 R씨 12세(世)손 AH을 중심으로 하는 후손들의 종손으로서 피고 J의 아버지인 망 T이 개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산재되어 있는 일부 특정선조묘에 관한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함께 수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관리해오다가 그 아들인 피고 J이 망 T을 이어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."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³⁾ 이에 의하면 망 T은 오랫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선조묘에 관하여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다른 종원들과 함께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인들 사이의 관계, 망 T을 제외한 다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내지 그 상속인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는 점, 원고가 199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는 공동선조인 S의 후손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인 집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선조들의 분묘 등에서 시제를 올리는 등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, 제사봉행,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여 오면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, 이 사건 부동산을 망 T 등 종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 [망 T 등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고의

정관이나 대표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그와 같은 사정이 종중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.]

2)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별지2 목록 '소장 부분 송달일자'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,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'지분'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해당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최진숙

판사권슬기

판사김웅수

별지

1) 망 AE의 상속지분 3/15는 자녀들에게 각 1/6씩 상속되었다.

2) 망 M에 대하여 1964. 7. 20.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실종선고 심판(이 법원

2015느단414호)이 2016. 7. 5. 확정되었고(갑 제9호증의 3), 망 M은 자녀 등이 없으므로 망 T의 상속인에서 제외한다.

3) 2020. 9. 24. 답변서 5쪽 참조